「신용거래 융자/대주 핵심 설명서」 신·구조문 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td>설명서 전체
<u>제비용</u>
<u>익일</u></td><td>거래에 사용된 모든 비용
다음날</td><td>어려운 금융 용어 개선</td></tr>
<tr><td>■ 신용거래 개요
<table>
<tr><td>신용거래융자</td><td><생략></td></tr>
<tr><td>신용거래대주</td><td><생략></td></tr>
<tr><td>담보유지비율</td><td>・신용거래융자금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140%~160%(종목별 차등 적용), <u>대주는 120%)</u>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가담보는 현금, <u>대용증권,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한 증권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u>.</td></tr>
</table>
■ 신용거래 위험성
<table>
<tr><td>위험성</td><td>・(생략)
・(생략)
・ 추가담보 미납 등으로 담보주식을 임의처분 하는 경우 전일종가의 <u>하한가로</u> 처분될 수 있으며 임의처분금액은 담보부족금액을 훨씬 상회할 수 있습니다. (투자사례(1) 참고)</td></tr>
</table></td><td>■ 신용거래 개요
<table>
<tr><td>신용거래융자</td><td><현행과 같음></td></tr>
<tr><td>신용거래대주</td><td><현행과 같음></td></tr>
<tr><td>담보유지비율</td><td>・신용거래융자금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140%~160%(종목별 차등 적용), <u>대주는 120% (대주전용 계좌 105%)</u>)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가담보는 현금 <u>또는 대용증권으로만 납부 가능 합니다. (단, 대용가가 없는 증권 중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은 가능)</u></td></tr>
</table>
■ 신용거래 위험성
<table>
<tr><td>위험성</td><td>・(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추가담보 미납 등으로 담보주식을 임의처분 하는 경우 전일종가의 <u>하한가 또는 15% 하락가격으로</u> 처분될 수 있으며 임의처분금액은 담보부족금액을 훨씬 상회할 수 있습니다. (투자사례(1) 참고)</td></tr>
</table></td><td>대주전용계좌 담보유지비율 반영</td></tr>
</table>

■ 투자자 유의사항

연락처 변경 시 유의사항	(생략)
담보부족금액 유의사항	(생략)
제한사항	(생략)
이자 납부시 유의사항	・투자자는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약정한 날에 신용거래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투자사례(3) 참고) ・(생략)
의결권 행사	・유통금융 (증권금융으로부터 차입하여 신용 매수한 종목)의 의결권 행사는 고객이 회사에 의결권 행사를 신청하여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유의사항

연락처 변경 시 유의사항	(현행과 같음)
담보부족금액 유의사항	(현행과 같음)
제한사항	(현행과 같음)
이자 납부시 유의사항	・투자자는 **신용거래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투자사례(3) 참고)~~ ・(생략)
의결권 행사	・유통금융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차입하여 신용 매수한 종목)의 의결권 행사는 고객이 회사에 의결권 행사를 신청하여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투자사례

* 이 부분 투자사례는 거래 제비용(수수료, 세금, 대출이자)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 비용을 포함할 경우 손실규모는 증가하게 됩니다.	
<투자사례1> 2그룹 종목 보유시	<계산식 표 생략> ☞ 반대매매 수량(611주)이 6,00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최저 담보유지비율(140%)을 충족하기 위한 임의처분 금액은 약 367만원(611주×6,000원)으로 추가담보 미납금액(80만원)의 약 5배 수준
<투자사례2> 3그룹 종목 보유시	<계산식 표 생략> ☞반대매매 수량(1,000주)이 4,90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최저 담보유지비율(150%)을 충족하기 위한 임의처분 금액은 약 490만원(1,000주×4,900원)으로 추가담보 미납금액(60만원)의 약 8배 수준 ☞반대매매 수량(1,000주)이 4,90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

■ 투자사례

* 이 부분 투자사례는 **거래에 사용된 모든 비용** (수수료, 세금, 대출이자)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 비용을 포함할 경우 손실규모는 증가하게 됩니다. *** 투자사례에 명시된 전일종가는 한국거래소 종가기준 입니다.** *** 임의 처분시 수량 산정 가격은 1·2그룹 종목은 전일종가 대비 15% 하락가격, 3·4·5·6그룹 종목은 하한가 입니다.**	
<투자사례1> 2그룹 종목 보유시	<계산식 표 현행과 같음> ☞ 반대매매 수량(611주)이 6,00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최저 담보유지비율(140%)을 충족하기 위한 임의처분 금액은 약 367만원(611주×6,000원)으로 추가담보 미납 금액(80만원)의 **약 4.6배** 수준
<투자사례2> 3그룹 종목 보유시	<계산식 표 현행과 같음> ☞반대매매 수량(1,000주)이 4,90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최저 담보유지비율(150%)을 충족하기 위한 임의처분 금액은 약 490만원(1,000주×4,900원)으로 추가담보 미납 금액(60만원)의 **약 8.2배** 수준 ☞반대매매 수량(1,000주)이 4,900원에

	할 경우(임의처분금액 490만원) 신용거래융자금 500만원 보다 작아 추가로 10만원 입금 필요. ☞총 손실금액은 510만원으로 투자원금(500만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
<투자사례3>	(생략)
이자적용방식 및 예시	**• 신용거래융자** -이자적용방식 : 소급법 (신용매수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적용) -이자율 <표 생략> -이자징수 시기 o (정 기) :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분 이자 징수 o (상환 시) : 상환일에 총 보유기간 일수에 따른 이자에서 기징수 이자를 차감하여 징수 **• 신용거래대주** -이자율 : 6% (이하 생략)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임의처분금액 490만원) 신용거래융자금 500만원 보다 작아 **10만원을 추가로 입금해야함** ☞총 손실금액은 510만원으로 투자원금(500만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
<투자사례3>	(현행과 같음)
신용거래별 이자적용방식 및 예시	**• 신용거래융자** -이자적용방식 : **소급법** (신용매수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적용) -이자율 <표 생략> *** 이자율은 대신증권 홈페이지 (www.daishin.com) > 인터넷뱅킹 > 대출/신용/대여 > 대출/신용업무안내 > 신용매매안내 에서 확인 가능** -이자징수 시기 o (정 기) :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분 이자 징수 o (상환 시) : 상환일에 총 보유기간 일수에 따른 이자에서 **기존에 납부한 이자를 빼고 징수** **• 신용거래대주** -이자율 : 6% *** 이자율은 대신증권 홈페이지 (www.daishin.com) > 인터넷뱅킹 > 대출/신용/대여 > 대출/신용업무안내 > 신용매매안내 에서 확인 가능** (이하 현행과 같음)

<table>
<tr>
<td>■ 신용거래 구체적인 조건</td>
<td>■ 신용거래 구체적인 조건</td>
<td></td>
</tr>
<tr>
<td>
신용거래조건

• 신용거래융자
(이하 생략)
• 신용대주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담보유지비율</td><td>-120%
-단, 동일 상품 내 신용/대출금을 함께 보유한 경우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로 적용됩니다.(신용/대출 잔고 보유시 140%~160% 담보유지비율 적용)</td></tr>
<tr><td>한도</td><td>
<table>
<tr><th>구분</th><th>요건</th><th>한도</th></tr>
<tr><td>초기</td><td>· 사전 교육 및 모의투자 이수</td><td>3천만원</td></tr>
<tr><td>경험</td><td>· 최근 2년 내 5회주1) 이상 투자 &
·누적신용대주 매도금액 5천만원주2) 이상</td><td>7천만원</td></tr>
<tr><td>성숙</td><td>· 최근 2년 내 5회 이상 투자 &
·누적신용대주매도금액 5천만원 이상 &
·최초투자 시점으로부터 2년 경과</td><td>10억원</td></tr>
</table>
</td></tr>
<tr><td>공매도순</td><td>- 보고 및 공시 주체 : 투자자
- 보고의무
o ① 공매도 잔고비율이 발행주식 총수 대비 0.01% 이상이면서 잔고</td></tr>
</table>
</td>
<td>
신용거래조건

• 신용거래융자
* 종목그룹별 세부 신용거래 조건은 “신용거래(융자/대주) 거래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 신용대주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담보유지비율</td><td>-[대주 신청 계좌] 담보유지비율 120%
• 단, ~~동일 상품 내~~ 신용/대출금을 함께 보유한 경우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로 적용됩니다.(신용/대출 잔고 보유시 140%~160% 담보유지비율 적용)
-[대주 전용 계좌] 담보유지비율 105%
• 대주 전용 설정 계좌는 신용융자/증권담보대출 이용 불가하며, 대주 거래만 가능 합니다.
• 담보 평가 시 담보증권 종류에 따라 할인 평가 합니다.</td></tr>
<tr><td>한도</td><td>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요건</th><th colspan="2">한도</th></tr>
<tr><th>대주신청계좌</th><th>대주전용계좌</th></tr>
<tr><td>초기</td><td>좌동</td><td>3천만원</td><td>3천만원</td></tr>
<tr><td>경험</td><td>좌동</td><td>7천만원</td><td>7천만원</td></tr>
<tr><td>성숙</td><td>좌동</td><td>10억원</td><td>3억원</td></tr>
</table>
주1) 대주 매도 후 상환까지 완료시 1회의 횟수로 봄
주2) 대주 매도 후 상환까지 완료된 거래의 대주매도금액 합계
</td></tr>
</table>
</td>
<td>대주전용계좌 담보비율 및 대주 한도 반영</td>
</tr>
</table>

	보유잔고보고의무/공시의무	평가액이 1억원 이상또는 ② 잔고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o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의 장 종료 후 지체없이 금융감독원(홈페이지)에 보고해야 함 - 공시의무 o 공매도 잔고비율이 발행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인 경우 o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의 장 종료 후 지체없이 금융감독원(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함 ※추가 거래 없어도 일별로 보고/공시 기준을 충족하면 매일 보고/공시 의무 발생함에 유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공시의무	- 보고 및 공시 주체 : 투자자 - 보고의무**/공시의무** o ① 공매도 잔고비율이 **상장**주식 총수 대비 0.01% 이상이면서 잔고평가액이 1억원 이상또는 ② 잔고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o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의 장 종료 후 지체없이 금융감독원(홈페이지)에 보고 및 공시 해야 함 ~~- 공시의무~~ ~~o 공매도 잔고비율이 발행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인 경우~~ ~~o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의 장 종료 후 지체없이 금융감독원(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함~~ ※추가 거래 없어도 일별로 보고/공시 기준을 충족하면 매일 보고/공시 의무 발생함에 유의	
	유상증자참여제한	- 유상증자 공시 다음날부터 신주발행가 확정을 위한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기산일)까지 대주 매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종목의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됨 -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 정규시장에서 매수한 경우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증자 참여가 허용됨	유상증자참여제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모집/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모집가액/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의 기간」(유상증자기간) 동안 해당 주식에 대하여 대주매도를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또는 지급정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체결일 기준으로 유상증자기간 이내에 전체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 체결한 경우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유상증자 참여가 허용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제한	**-「주권상장법인의 CB/BW의 발행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부행사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의 기간」(사채발행기간) 동안 해당 주식에 대하여 대주매도를 한 경우 CB/BW 취득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또는 지급정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체결일 기준으로 사채발행기간 이내에 전체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 체결한 경우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CB/BW 취득이 허용됨.**	